

##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2호(2008.01.31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중구고시 제2009-12호(2009.03.20.)로 경미한 변경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4호(2011.6.23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중구고시 제2014-14호(2014.02.26.)로 정비구역 변경고시된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당해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 인가에 앞서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.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토지등소유자에게 본 공고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. 관련도서는 중구청 주택과 및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4년 11월 26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14.11.26 ~ 12.10

나. 공람장소 : 중구청 주택과(☎ 02-3396-5723) 및 조합사무실(☎ 02-2237-4881)

다. 사업시행계획(요지)

1) 사업명칭 :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) 위 치 : 중구 신당5동 85번지 일대

3) 시행면적 : 8,224.8㎡

4) 시 행 자 :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김거부)

5)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

6) 건축계획 : 아파트3개동 176세대(임대아파트 없음) 및 부대복리시설

7) 정비기반시설 : 도로 929.8㎡, 근린공원 364㎡, 소공원 354㎡

라. 관계도서 : 생략(중구청 주택과 및 조합사무실 비치 도서와 같음)